성주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0년 11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2008. 5월부터 사용중인「외국인주민」용어를 조례에 반영하고,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활동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자문 기능에 머문「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에 자치단체 지원시책 심의권 부여, 민간위원(외국인주민 포함) 참여 확대 등 기능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칭 변경

-「성주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성주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나.「외국인주민」용어 반영

다. 외국인 지원범위확대

- 지원대상에 외국인 ·외국투자기업 사업활동 지원 추가

라.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 기능 강화(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 동 위원회가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단순 자문기능에 그치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 심의규정 신설
- 「외국인주민지원 시책위원회」로 명칭 변경,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에 대한 심의권 부여, 민간위원(외국인주민 포함) 과반수 참여 의무화 등 역할 강화

3. 참고사항

가. 관련공문 : 도 자치행정과-18439(2010.09.07)호의 표준조례안

나. 예산조치 : 향후 사업추진시 예산부서 협조 요청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10.13~2010.11.01) 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주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성주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외국인들”을 “외국인주민들”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국인주민” 이라 함은 성주군(이하 “군” 이라 한다)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는 자 등을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외국인 가정”을 “외국인주민 가정”으로 하고, “외국인”을 각각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외국인 지원 단체”를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로 하고,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거주외국인의 지위)”를 “(외국인주민의 지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거주외국인”을 각각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다음 해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을 “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기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2장의 제목 “자문위원회”를 “시책위원회”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시책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을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과반수 이상을 위촉 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위원 : 부군수, 교육청・경찰서등 적정직위에 있는 자
2. 민간위원 :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제7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호선한다”를 “선출한다”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문기능”을 “자문 및 심의기능”으로 한다. 제8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

제8조제2호(종전의 제1호) 중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을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으로 한다.

제8조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 중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를 “위원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3장의 제목 “외국인 지원 활성화”를 “외국인주민 지원 활성화”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을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하고, “설정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4호 중 “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제15조 중 “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외국인에 대한 표창)”을 “(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외국인”을 각각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성주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성주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외국인주민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라 함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는 자 등을 말한다.
3. “외국인 가정”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 ----------외국인주민----------.
4.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 -------외국인주민----------.

현 행	개 정 안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①군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 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① -- 외국인주민----------.
②성주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주민----------.
제4조(군의 책무) ① (생 략)	제4조(군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군수는 다음 해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5조(지원대상) 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1. ~ 3. (생 략)	1. ~ 3.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원의 범위) ①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지원의 범위)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4. 외국인주민----------
<신 설>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5.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6. 기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장 자문위원회	제2장 시책위원회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제4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성주군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시책위원회의 설치) ① ----------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과반수 이상을 위촉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1. 당연직위원 : 부군수, 교육청・경찰서등 지원업무 관련부서 책임자 및 의회의원	<삭 제>
2. 민간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삭 제>
<신 설>	③ 시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위원 : 부군수, 교육청・경찰서등 적정직위에 있는 자 2. 민간위원 :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③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 선출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 자문 및 심의기능--------.
<신 설>	1.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 ----------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현 행	개 정 안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0조(회의) ①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이 ----------.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3장 외국인 지원 활성화	제3장 외국인주민 지원 활성화
제12조(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시행령」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 외국인주민 ----------.
제13조(업무의 위탁) ①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주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 외국인주민----------.

현 행	개 정 안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따라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세계인의 날) ① 군수는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성주군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	제14조(세계인의 날) ① ---------- ---------- 외국인주민---------- ---------- ---------- ---------- ---------- 설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 따라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명예군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3. ---------- (외국인주민 --) ---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4. -------- 외국인주민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포상) 군수는 국내거주 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외국인주민-- ---------- ---------- ---------- ---.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외국인에 대한 표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 ① ----------외국인주민----------.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외국인주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의 외국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성주군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③ ------- 외국인주민 ----------.